

의안번호	2214049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6. 3. 11.
추계번호	25A604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사업 수행 비용과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28억원 (연간 25억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 제22조의3 (연합회의 사업) 및 안 제22조의4(보조금)	2,560	2,560	2,560	2,560	2,560	12,800	2,5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2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 규정
2	안 제14조의2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 1.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2. 해외 판로·플랫폼 구축 지원 3.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3	안 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의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지역의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2. 지역 내 공동기반시설의 관리·운영 3.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집적지구 운영성과의 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 규정
4	안 제18조의2(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지원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평가 2. 기술혁신, 표준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도시형소공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4.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 규정
5	안 제19조의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함(제2항)	
6	안 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1. 도시형소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도시형소공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도시형소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 규정
7	안 제22조의4(보조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등)						
1	안 제9조의2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화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디지털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는 등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중소기업벤처부는 소공인의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table><tr><th>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th><th>사업개요</th><th>2026년 예산 (백만원)</th></tr><tr><td>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제조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td><td>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td><td>98,000</td></tr></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제조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98,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제조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98,000							
2	안 제14조의2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는 등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중소기업벤처부는 소공인에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table><tr><th>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th><th>사업개요</th><th>2026년 예산 (백만원)</th></tr><tr><td>소공인특화지원-판로개척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td><td>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 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 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 보와 매출성장에 기여</td><td>6,694</td></tr></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소공인특화지원-판로개척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 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 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 보와 매출성장에 기여	6,694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소공인특화지원-판로개척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 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 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 보와 매출성장에 기여	6,694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등)
3	안 제15조의2(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전담 기관의 지정)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 지원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18조의2(도시형 소공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	
5	안 제19조의2(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향후 가입할 예정인 도시형소공인의 수와 가입자의 기준보수액, 보험료를,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6	안 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7	안 제22조의4(보조금)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안 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및 안 제22조의4(보조금)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도시형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안 제22조의3)하고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안 제22조의4)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5조의21)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 애로사항 발굴,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2015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표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회계, 코드)	내용	예산		
		2024년	2025년	2026년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소상공인 연합회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4131-321)	소상공인 업종/지역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조사·연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소 상공인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예산: 2,660 · 규제·애로발굴해소 400 · 현안개선 방안연구 460 · 역량강화 900 · 운영비 보조 900	예산: 2,660 · 규제·애로발굴해소 400 · 현안개선 방안연구 460 · 역량강화 900 · 운영비 보조 900	예산: 2,560 · 규제·애로발굴해소 400 · 현안개선 방안연구 400 · 역량강화 860 · 운영비 보조 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사업 수행 비용과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 제22조의3 (연합회의 사업) 및 안 제22조의4(보조금)	2,560	2,560	2,560	2,560	2,560	12,800	2,5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실제 사업내용·운영비 소요 및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